

## 용인센트레빌그리니에(가칭)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하며,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 제3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17.(예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개요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12-1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9층~19층, 3개동 총 171세대
  -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외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시기** : 2023년 10월 예정

※ 본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 단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승인이 완료되었으며(2023. 07. 28.) 잔금완납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구분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m <sup>2</sup>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입주 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84A	84.8243m <sup>2</sup>	22.0151m <sup>2</sup>	106.8394m <sup>2</sup>	46.6488m <sup>2</sup>	153.4882m <sup>2</sup>	17	2	2023년 10월 예정
	84B	84.8951m <sup>2</sup>	21.8790m <sup>2</sup>	106.7741m <sup>2</sup>	46.6876m <sup>2</sup>	153.4617m <sup>2</sup>	25	3	
	84C	84.8951m <sup>2</sup>	21.8790m <sup>2</sup>	106.7741m <sup>2</sup>	46.6876m <sup>2</sup>	153.4617m <sup>2</sup>	1		
	84D	84.8243m <sup>2</sup>	21.9009m <sup>2</sup>	106.7252m <sup>2</sup>	46.6488m <sup>2</sup>	153.3740m <sup>2</sup>	6		
	84E	84.8243m <sup>2</sup>	21.9009m <sup>2</sup>	106.7252m <sup>2</sup>	46.6488m <sup>2</sup>	153.3740m <sup>2</sup>	1		
	84F	84.8799m <sup>2</sup>	21.7645m <sup>2</sup>	106.6444m <sup>2</sup>	46.6793m <sup>2</sup>	153.3237m <sup>2</sup>	11	1	
	84G	84.9325m <sup>2</sup>	21.6498m <sup>2</sup>	106.5823m <sup>2</sup>	46.7082m <sup>2</sup>	153.2905m <sup>2</sup>	13	1	
	84H	84.8779m <sup>2</sup>	22.1684m <sup>2</sup>	107.0463m <sup>2</sup>	46.6781m <sup>2</sup>	153.7244m <sup>2</sup>	16	1	
	84I	84.8627m <sup>2</sup>	22.0756m <sup>2</sup>	106.9383m <sup>2</sup>	46.6698m <sup>2</sup>	153.6081m <sup>2</sup>	16	2	
	84J	84.9905m <sup>2</sup>	22.1047m <sup>2</sup>	107.0952m <sup>2</sup>	46.7401m <sup>2</sup>	153.8353m <sup>2</sup>	18	2	
	84K	84.8860m <sup>2</sup>	22.4450m <sup>2</sup>	107.3310m <sup>2</sup>	46.6826m <sup>2</sup>	154.0136m <sup>2</sup>	18	2	
	84L	84.8860m <sup>2</sup>	22.4450m <sup>2</sup>	107.3310m <sup>2</sup>	46.6826m <sup>2</sup>	154.0136m <sup>2</sup>	1		
	84M	84.9154m <sup>2</sup>	21.0726m <sup>2</sup>	105.9880m <sup>2</sup>	46.6988m <sup>2</sup>	152.6868m <sup>2</sup>	13	1	
	84N	84.9376m <sup>2</sup>	23.2862m <sup>2</sup>	108.2238m <sup>2</sup>	46.7111m <sup>2</sup>	154.9349m <sup>2</sup>	7	1	
	84O	84.9376m <sup>2</sup>	23.2862m <sup>2</sup>	108.2238m <sup>2</sup>	46.7111m <sup>2</sup>	154.9349m <sup>2</sup>	1		
	131A	131.5362m <sup>2</sup>	34.9600m <sup>2</sup>	166.4962m <sup>2</sup>	72.3378m <sup>2</sup>	238.8340m <sup>2</sup>	1		
	118	118.9605m <sup>2</sup>	32.5988m <sup>2</sup>	151.5593m <sup>2</sup>	65.4217m <sup>2</sup>	216.9810m <sup>2</sup>	1		
	139	139.9067m <sup>2</sup>	37.1785m <sup>2</sup>	177.0852m <sup>2</sup>	76.9410m <sup>2</sup>	254.0262m <sup>2</sup>	1		
	132	132.4306m <sup>2</sup>	35.5081m <sup>2</sup>	167.9387m <sup>2</sup>	72.8295m <sup>2</sup>	240.7682m <sup>2</sup>	1		
	133	133.6139m <sup>2</sup>	36.2699m <sup>2</sup>	169.8838m <sup>2</sup>	73.4804m <sup>2</sup>	243.3642m <sup>2</sup>	1		
131B	131.7836m <sup>2</sup>	35.0160m <sup>2</sup>	166.7996m <sup>2</sup>	72.4739m <sup>2</sup>	239.2735m <sup>2</sup>	1			
130	130.8935m <sup>2</sup>	35.0801m <sup>2</sup>	165.9736m <sup>2</sup>	71.9843m <sup>2</sup>	237.9579m <sup>2</sup>	1			
<b>합 계</b>							171	16	

※ 84C, 84E, 84L, 84O 타입은 최상층 다락세대임.  
 ※ 131A, 118, 139, 132, 133, 131B, 130 타입은 최상층 복층 세대임.

**기관추천 유형별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 전용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이내]**

※ ( )는 예비추천 세대임

구분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84I	84J	84K	84L	84M	84N	84O	소계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		1(5)								1(5)						2(10)
	장기복무 제대군인						1(5)							1(5)			2(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5)		1(5)	1(5)	1(5)					4(20)
중소기업 근로자		1(5)							1(5)	1(5)		1(5)					4(20)
장애인	경기도	1(5)													1(5)		2(10)
	서울특별시		1(5)														1(5)
	인천광역시		1(5)														1(5)
합 계		2(10)	3(15)				1(5)	1(5)	1(5)	2(10)	2(10)	2(10)		1(5)	1(5)		16(80)

■ **당첨예정자**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수는 현재 분양승인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분양 일정(예정)**

구분	신청 접수일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b>2023.08.17.(목) 예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li> <li>당사 홈페이지(https://www.yongin-centreville.com)</li> <li>분양홍보관 대표전화 : 1551-2121</li> </ul>
특별공급 청약접수 (인터넷 청약)	<b>2023.08.28.(월) 예정</b> <b>09:00~17:3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인터넷청약(www.applyhome.co.kr / 09:00~17:30)</li> <li>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포함</li> <li>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현장 방문접수 (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10:00~14:00)</li> </ul>
당첨자 발표	<b>2023.09.05.(화) 예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ul>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거나,

②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하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대상 자격요건

<p><b>자격요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li> </ul> </li> <li>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주택형별/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li> </ul> </li> <li>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 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청약홈 www.applyhome.co.kr)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li> <li>·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 (1회 특별공급 간주)</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하여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li> </ul>												
<p><b>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36조에 의거,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선정 제한]</li> </u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245 1464 1509 1751">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무주택세대구성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px;">가.</td> <td>주택공급신청자</td> </tr> <tr> <td>나.</td> <td>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td> </tr> <tr> <td>다.</td> <td>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 </tr> <tr> <td>라.</td> <td>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 </tr> <tr> <td>마.</td> <td>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 </tr> </tbody> </table>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입주자저축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li> </ul> </li> <li>① 청약예금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li> </ul> <p>&lt;청약예금의 예치금액&gt;</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경기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p>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각 기관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ul>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공통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분양홍보관)가 가능합니다. (10:00~14:00)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건본주택) 시에는 방문예약 후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문의사항 안내 및 위치도



대표전화 : 1551-2121  
[www.yongin-centreville.com](http://www.yongin-centreville.com)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